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47호

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36호(2018.10.12.)로 사업시행 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20호(2021.12.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을 변경하고 및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

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

-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2018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(2018.2.9.)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(2017.12.5.)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(법률 제14569호)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따름

나 명칭: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: 강북구 수유동 486-2 외 1필지

나. 면적: 9,235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(명칭): 삼흥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인순)

나.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길 95, 노인정 2층

4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18.10.12.

6. 변경 사유 및 내용

가. 변경 사유: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및 최고고도지구(북한산 주변)
완화기준 변경에 따른 높이 등 완화 적용으로 인한 사업
시행계획의 전반적 변경

나. 변경 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대지면적	9,157㎡	9,157㎡
건축면적	2,615㎡	2,120.5㎡
연 면 적	25,297.8㎡	31,818.36㎡
건 폐 율	28.56%	23.15%
용 적 륜	180.75%	199.90%
높 이	최고 27.2m	최고 44.6m
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층 수	지하3층/지상9층	지하4층/지상15층
세 대 수	174	193